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18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5.

발 의 자:정필모·이용빈·유정주

한준호 • 이학영 • 신영대

변재일 • 허 영 • 박광온

오영환 · 김성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방송법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으로 사업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3년으로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호).

법률 제 호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3호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주발사체 발사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12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	
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	
허가를 받을 수 없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	3
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	
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	
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	
이 면제된 날부터 <u>2년</u> 이 지	<u>3년</u>
나지 아니한 사람	
4.•5. (생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